

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(백선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596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1. 12.

발 의 자 : 백선희 · 강경숙 · 이해민

황명선 · 정준호 · 서왕진

손명수 · 박희승 · 정춘생

황운하 · 최혁진 · 이수진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사회복지사업의 대상 법률로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, 「아동복지법」 등 29개 법률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을 규정하고 있음. 그리고 그 사업 내용을 보호·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, 사회복지상담 및 직업 지원, 지역사회복지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음.

그런데 「노후준비 지원법」은 국민의 노후준비에 필요한 노후준비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, 노후준비서비스 홍보 및 노후준비 인식 제고 등 노년기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법률은 사회복지사업의 대상 법률에 포함되지 않고 있음.

이에 사회복지사업의 대상 법률에 「노후준비 지원법」을 포함하여 노후준비에 필요한 사업이 사회복지사업에 속함을 명확히 하려는 것

임(안 제2조제1호고목 신설).

법률 제 호

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고목을 노목으로 하고, 같은 호에 고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고. 「노후준비 지원법」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.
1. “사회복지사업”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·선도(善導)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, 직업지원, 무료 숙박, 지역사회복지, 의료복지, 재가복지(在家福祉), 사회복지관 운영,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.	1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가. ~ 허. (생략)	가. ~ 허. (현행과 같음)
<u><신설></u>	<u>고. 「노후준비 지원법」</u>
<u>고.</u> (생략)	<u>노.</u> (현행 고목과 같음)
2. ~ 7. (생략)	2. ~ 7. (현행과 같음)